노동권 침해, 스스로 대처하기

공인노무사 김희향

임금체불과 권리구제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기



임금체불 진정

- 노동부에 임금 체불을 신고하면, 회사에서 제가 신고한 것을 알게 되나요?
- 노동부에 출석 조사를 반드시 가야 되나요?
- 출석 조사때 사장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만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 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돈을 받아주나요?
- 체불임금을 받는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노동부에 신고해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기는 했는데, 사업주가 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 진정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접수 (인터넷 가능)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 서면 or 문자 발송

양당사자 출석조사 (조서작성)

체불금품 확정 지급지시 명령 검찰송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진정서 작성 예시

[근무자로서의 다짐!]

저는 본 계약체결 이후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본 계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점주님께서 (경영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근태에 어떠한 문제가 없도록 의무를 다할 것이며, 저에게 주어진 근무시간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잘 해결해서 점주님께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또한 5분 이상 핸드폰 사용 등 개인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꼭! 약속 드리며, 시제확인(인수인계)도 출근해서 단1회 실시할 것을 반드시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상품을 항상 가득 채워놓고 휴식하겠으며, 상품이 판매되면 그 즉시 채우도록하겠습니다.

이에 근무자로서의 다짐을 약속 드리며, 근무순서에 입각하여 완벽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채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점주님과 맺은 계약내용 모두를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지켜나갈 것을 서약하는 바입니다.

본 단시간근로자 고용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갑"과 "을"이 보관한다.



라. "을"이 본 계약기간을 위반 시에는 "갑"은 CU본사와 맺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준수하여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점을 반드시 정상화 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을"을 대신하여 근무할 신규 근무자를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며, 그 채용과 관련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함) 그 항목은 신규채용기간 동안 들어간 "갑"의 비용 즉, 인수자 교육기간 발생된 총 교육비, 채용공고등록비(알바몬 기준),신규채용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손해금액, 면접비 등이고, 금액은 아래와 같다.

- ① 인수자 교육기간 발생된 총 교육비(시급+주휴수당): 글 기사, 5 0 원으로 하여 퇴사월 급여에서 차감한다.
- ② 기타: 신규채용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손해금액, 면접비 등

위 금액은 "을"이 지급받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단, 점 모집공고에서 정한 최소 근무기간 기개월 이상을 "을"이 근무하였을 경우에 별도의 공제금액은 없다). 만약 "을"이 이를 거절할 경우 "갑"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을"에게 위 금액 전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진정 처리 절차

- 5. 사직기간 준수 및 인수인계
- 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나오지 않으면 **야반도주로 위법이다.** 근무자는 사직통고 자유는 있지만 근무자 충원이 완료 된 후 **인계까지 마쳐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 나. 1-가에서 "갑"과 "을"이 정한 기본근무 개월 수가 지난 후 "을"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최소1개월 전에 "갑"에게 퇴사를 통보함이 원칙이고 만약, 1-가에서 "갑"과 "을"이 정한 기본근무 개월 수가 도래하기 전에 "을"의 급격한 사정으로 근무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24시간 영업을 지속해야만 하는 CU본사와의 프랜차이즈계약 관계상 반드시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를 마치고 퇴사해야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갑"은 "을"이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을"에게 손해배상청구(지급명령신청서 및 내용증명 우편발송)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노동부 신고 종류

진정

■ 문제해결을 요구 하는 민원

고소

-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 업무와 관련하여

고발

-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 업무와 관련하여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문로감독관이 민원처리
- 도무사 대리가능
- 일방의 불출석이 지속되거나 양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면 사건이 수개월 이상 지연
- 기본처리기간: 25일 (1회 연장가능,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상 연장 가능)

고소·고발

- 관할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지휘,감독
- 노무사 대리 불가
- 사업주의 3회 이상 불출석시 소배가능
- 일방의 주장으로 체불금품이 확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가능
- 기본처리기간: 2개월 (검사의 지휘로 연장가능)



<서식>

- 법에서 정한 공식 서식은 없음
- 노동부에서 게시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당사자>

■ 진정인(=근로자) / 피진정인(=사업주 / 체불당시의 사장, 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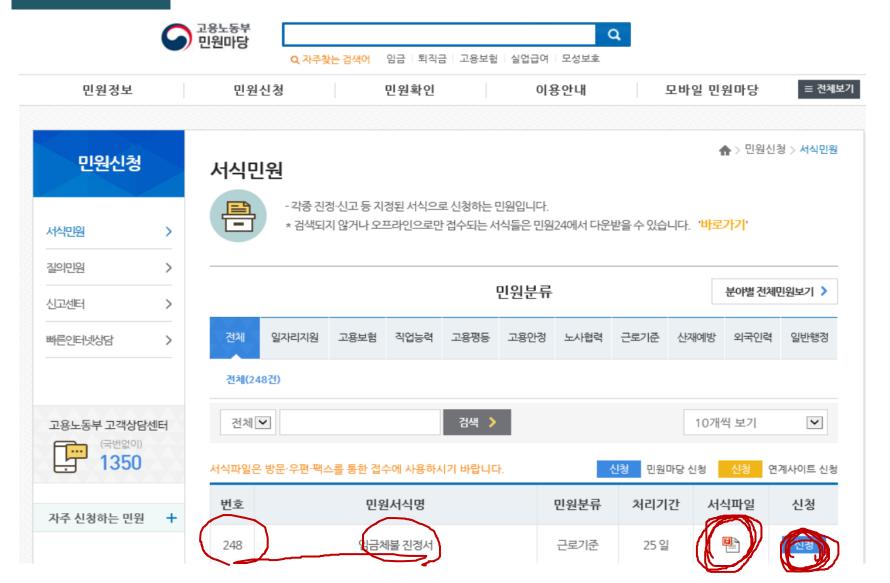
<작성내용>

■ 진정 내용은 별지를 이용해서, 상세히 기재 (당사자관계, 근로조건, 사건경위, 법위반, 내용, 임금체불금액)



노동부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임금체불 진정 등 예시

<붙임1>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서 서식

진 정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답니나.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사건에 따라 연장가능)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정연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근로	1	주소							
		근무기간 :				재직여부 :재직[√], 퇴직[]			
1									
W x !:	וסו	성명:			주민등	록번호			
피진정인 사용자)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② 피진정인 (<뒷면> 작성방법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④를 확		주소							
해당자만	·		휴대전			<u>5</u> :			
	사업장	명				사업의 종류 제조			
대표자		성명				가동여부 :가동[√], 휴·폐업[]			
	연락처	연락처				상시근로자수: ()명			



사업장
개 용

③ 근무지(소재지와 다른 경우 작성)

④ 직상·상위 수급인(<뒷면> 작성방법의 ②,④를 확인하여 해당자만 작성)
회사명 : 대 표 :
주 소 : 전화번호 :

상기 본인은 임금 6개월 분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근로기준법」 제104조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33조에 따라 진정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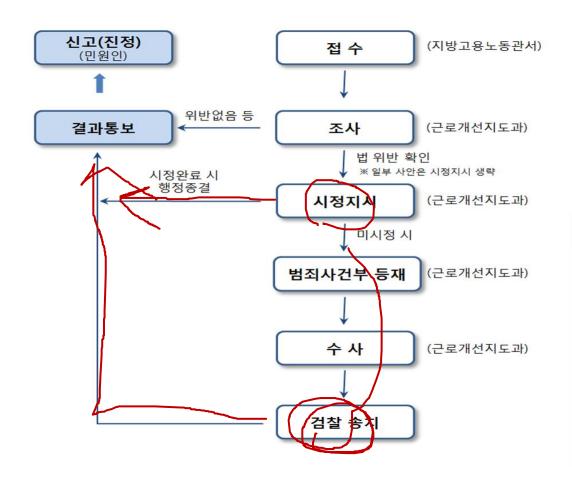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 ①란에는 피진정인 인적사항 등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에 한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②란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또는 상위 수급인을 신고하고자 할 때 적습니다.
- 1)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른 직상 수급인: 하도급을 준 사업주가 귀하를 고용한 사업주(하도급업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내용대로 원자재 공급을 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이유 때문에 임금 체불이 발생하여, 하도급을 준 사업주(직상 수급인)를 신고하고자 할 때 작성
 - *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업종이 해당
-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곳에서 귀하를 고용한 사업주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속칭 전문시공업자, 오야지 팀장 등)이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하도급을 준 바로 위 단계의 건설업자를 신고하고자 할 때 작성
 - * 건설공사에서만 해당
- ③란에는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 근무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④란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또는 상위 수급인의 사업장 정보를 적습니다.
- ※ 피진정인 란 등에는 알고 있는 내용에 한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근거 :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제8호







1. 진정서 제출

- 관할: (제출 기관): 사업장(지사,지점) 주소지의 노동지청
- 제출방법: 온라인, 방문제출, 우편제출

2. 출석 조사

- 2주 정도 이후에 문자 또는 우편으로 출석통지서 수령
- 출석일자 조정 가능
- 진정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근로자대표 선정하여 1명이 출석 가능
- 근로자, 사업추별도 조사 / 필요한 경우 동시 출석하여 대질조사
-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조세 작성





3. 체불금품 확정

세절 금액 기준 ✓

제불임금·사업주 확인서 발급 (노동부)

4. 시정지시

- 시정 지시서 회사에 전달
- 시정 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퇴직자용

발급번호									(알쪽)
	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①체물	근무기간					01-204			
근로자	근로게약기간 (재리자인 설위)		[]1개월이상 []1개월미만		(자격자인 결무)	시간달 ()원)원	
	일글산정기간					장일자굍			
	비교								
		_							
		l업잔면				시업자등록난호			
	법인 여부		[]	범인	[]개인	법인등록번호 (범인인 걸무)			
	ALS	선명				주민등록번호			
	실제 대표자					연락처			
	-1, 1	주소							
②체물	멸의 대표자	선면				주민등록번호			
사업주						연락처			
		주소							
	사업잘 소재지						삼시 근로	자수	
	체물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						건설공사 해달여부 []해당 []미해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HIT.								
	<u>+</u> = #					원			
		구분		Ŋ	일글	되직급여동 (회학(원 설위	휴업수달	출산전후 휴가기간 줄 급여	자하보산급 (퇴직자인 결무)
		계							
④체 를 일급등	취졸 (마지막)	최종(마지막) 1개 <00년 00월	00일~						
(원) (원)	3개월	00년 00월					\Box		
	(3년)분	최종(마지막 2개 <00년 00월 00년 00월	00일~						
		최종(마지막) 3개 <00년 00월	원(3의분 00일 ~						
		00년 00월	00일>			\perp			
	비교								



5. 합 의

- 합의서 작성 (합의금액, 합의대상이 되는 체불내역, 지급일, 지급방법,취항, 민·형사 부제

소)

세전 금액이 기본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비용 공제됨)

세후 금액 or 실지급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유리 노동부에서 합의서 작성해주지 않음!

6. 취하

- 체불임금 지급받으면, 취하서, 처벌불원서 제출

🍑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다시 진정, 고소, 고발 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

-지급받기 전에 미리 처벌불원서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체	불임금·합의금 등	등 금품 수령) :	진정(고소장)) 취하서		
1. 당시	사자 및 민원접	수번호						
	진정인(고소	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	피진정인(피	고소인)						
	성명				전화번호			
`_	사업체명				주소			
2.	니하사유 및 형	사처벌에 관	한 의사					
-	취하사유: [2	직접기입			_ (예. 임금지	지급, 합의 등)	
-	체불금품 수	경내역		•				
	계		임공		4 43		기타금품	
)						
_	형사처벌을 3	희망하는지	겨부: (직접기	입)		(લ	. 처벌원하지?	않음)
	`	1.*					대해서는 "처벌 과는 보내지 않으	
		2021	. (\$	취하인) 성대	명	(인 또	는 서명)	

취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따른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

- 귀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임금 등 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 2.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귀하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3. 귀하가 체불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1) 귀하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까?

(답) 네, 통보 받았습니다. 성명 _____(인 또는 서명)

(질문2) 귀하는 앞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사건을 제기할 수 없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할 수도 없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까?

(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명 _____(인 또는 서명)

(질문3) 귀하는 어느 누구로부터 강요를 받지 않고 자발적인 결정으로 취하서를 제출한 것입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성명 _____(인 또는 서명)

처벌불원서



형사처벌 절차

1. 검찰송치

- (진정) 시정 지시에 불응 → 범죄인지 → 검찰 송치→ 형사 기소 → 형사 재판
- (고소, 고발) 검찰 송치 → 형사 기소 → 형사 재판

2. 불기소

-(진정) 노동부 내사종결 - 재진정

(진정, 범죄인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 항고, 재정신청 불가

(고소, 고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항고)고등검찰청), 재정신청(고등법원)



민사 절차

1. 법률구조공단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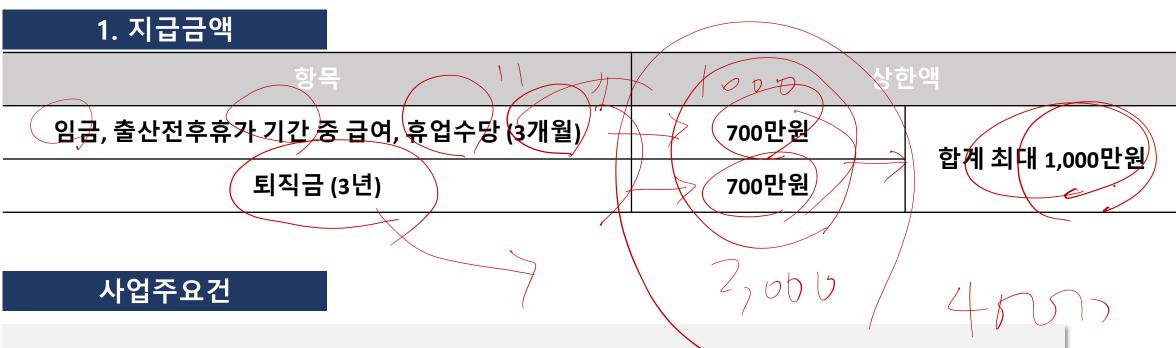
-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 무료 변론 가능 (인지대, 송달료, 근로자 변호사비 무료)
- 패소 경우, 상대방 변호사비 지불 (청구금액 5,000만원 기준, 변호사비 440만원)

2. 개별 민사소송

- 비용 개인 부담
- 재산 파악 및 가압류 먼저 진행



간이대지급금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 6개월 이상 사업운영
- (퇴직자 : 퇴직일 기준)
- (재직자 : 마지막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 기준) (소송 또는 진정을 제기한 날 이전)
- 미지급 임금 확인되어야함 법원 판결 or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확인서 ✓

간이대지급금

근로자요건 - 퇴직자

<퇴직자 >

■ ① 확정판결 등에 따른 간이 대지급금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mark>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하</mark>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자

■ ②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퇴 직자

간이대지급금

근로자요건 - 재직자

<재직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저소득 재직근로자 (시급기준, 최저임금의 110% 미만)

- ① 확정판결 등에 따른 대지급금 : 마지막 <u>체불</u>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 내 소송 등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재직 근로자
- ②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진정 등을 제기한 날 기준)

간이 대지급금

청구기한

<퇴직자>

- ① 확정판결 등에 따른 대지급금
- :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②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재직자>

- ① 확정판결 등에 따른 대지급금
- :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②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간이 대지급금

청구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제출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노동부 체불임금 확인서 (or 법원 판결문)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비	사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①근무기간	91 01	I d	91 01					
	[]퇴직자 대자	월 일	~ 년] 재직자 대기	<u>월</u> 일 지급금 청구					
	②청구 구분 []판결등에 때			등•사업주 확인서에 띠	다른 청구				
	③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			원				
청구인	④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혹 급받은 금액(사업주 지급금	P정금액에 대하여 대 퇴직연금, 외국인	지급금 지급 청구일까지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지 험·신탁 및 보증보험					
	가. 지급 청구일까지 지급받	지 못했으나, 향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퇴직연금이 []예 [_				
	나. 지급 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	했으나, 향후 외국인 근	로자의 출국만기보험 • 신탁	· 및 보증보험으로 지급받을 ! []예 [보험금이 있습니까?]아니오				
	⑤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가. 최종 3개월분재직자의 경우 소송 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까만 3개월문의 암금·유업구	강•술산선우유/사산중급여	원 원				
	⑥지급받아야 할 대지급금	0(4412 01)	⑦대지급금 지급(일부지	i급 제외) 결정 시 희망					
		원	[]문자메시지	[]우편					
®입금	입금은행 예금주	<u> </u>	계좌번호	일반계좌 압류방지 전	[] 변용계좌 []				
의뢰	*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발급받아 기재								
 ⑨대상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주	소재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도산 대지급금

사업주요건

사업주 요건 공통요건

-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장일 것 (권병 보통만 있어도 대상임)
- 기업의 도산(법정관리, 법인파산, 사실상 도생)이 있을 것

재판상 도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행하는 파산선고결정,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것

사실상 도산

-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일 것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것 //
- 상기 두 가지 요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u>실상</u> 도산을 인정받을 것 //

도산 대지급금

근로자요건

근로자 요건

- <u>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u> 이내에 해당사업장에서 퇴직할 것
- *퇴직기준일은 다음과 같이 결정
- →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 →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즉, 퇴사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도산 등 신청이 되어야 함
-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 퇴직자에 한함(재직자는 신청 불가능)



도산 대지급금

지급금액

	30세 미만	30 대	40 대	50대	60대 이상	
임금·퇴직금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310					

-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 *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전체 평균 급여 350만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 도산사건에 한해 국선노무사 선임가능.(간이대지급금 불가, 도산대지급금 중 법정관리 기업과 파산 사업장 불가)



감사합니다

